

## 동반성장론(협력) 통합약정서(동반협력기업용) 개정대비표

### 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<b>동반성장론(협력) 통합약정서</b> (동반협력기업용 - 상환청구권 없음)</p> <p><b>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</b></p> <p>제 1 조 거래조건 ~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(기재생략)</p> <p><b>동반성장론(협력) 추가약정서</b> (동반협력기업용)</p> <p>제 1 조 (목적) ~ 제 4 조 (입금계좌) (기재생략)</p> <p>제 5 조 (상생매출채권의 발행)</p> <p>①(기재생략)</p> <p>1.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발행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부터 (1 차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) 매출채권 만기일 <b>전</b> 은행영업일까지 하위기업과의 상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생매출채권을 하위기업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원정채권 만기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</p> <p>2.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는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하며, <b>상위기업으로부터</b></p>	<p><b>동반성장론(협력) 통합약정서</b> (동반협력기업용 - 상환청구권 없음)</p> <p><b>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</b></p> <p>제 1 조 거래조건 ~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동반성장론(협력) 추가약정서</b> (동반협력기업용)</p> <p>제 1 조 (목적) ~ 제 4 조 (입금계좌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5 조 (상생매출채권의 발행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발행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부터 (1 차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) 매출채권 만기일 <b>직전</b> 은행영업일까지 하위기업과의 상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생매출채권을 하위기업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원정채권 만기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</p> <p>2.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는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하며, <b>최장 만기일은</b></p>	<p>용어 수정</p> <p>외상매출채권</p>

<p>받은 매출채권 발행일로부터 최장 180 일 이내로 합니다.</p> <p>3.(기재생략) ②~③(기재생략)</p> <p><b>제 6 조 (상생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</b></p> <p>① 상생매출채권의 취소는 해당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<b>전</b>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②~⑥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7 조 (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양도승낙)</b></p> <p>①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은 하위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(또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양도통지방법)으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하여 본인은 <b>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p>②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8 조 (건별대출의 신청)</b></p> <p>①~③ (기재생략) ④ <b>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</b> ⑤ <b>대출가능기간은 상생매출채권별로 채권발행일 이후 3 은행영업일일 되는 날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</b>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. 다만,</p>	<p><b>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</b></p> <p>3.(현행과 같음) ②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6 조 (상생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</b></p> <p>① 상생매출채권의 취소는 해당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<b>직전</b>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②~⑥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7 조 (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양도승낙)</b></p> <p>①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은 하위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(또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양도통지방법)으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하여 본인은 <b>아래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하위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li>2.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</li> <li>3.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(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)</li> <li>4. 하위기업의 채권자로부터 (가)압류가 있거나 하위기업이 제 3 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</li> <li>5. 전산조작오류 등 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6. 기타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, 존속,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8 조 (건별대출의 신청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 <b>&lt;삭제&gt;</b> ④ <b>대출가능기간은 상생매출채권별로 채권발행일 이후 3 은행영업일일 되는 날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</b>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. 다만,</p>	<p>만기일 단축에 따른 문구 수정</p> <p>용어 수정</p> <p>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수정 (예외 사항 추가)</p> <p>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단축에 따른 삭제 체상 및 용어 수정</p>
--	---	---

<p>원청채권의 만기일 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⑥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9 조 (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10 조 (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및 대출상환)</b></p> <p>① (기재생략)</p> <p>1. 원청채권 만기일 <b>전</b> 은행영업일까지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액은 해당 대출금의 기일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원청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우선 상환 하며,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2.~4. (기재생략)</p> <p>②~④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11 조 (대출취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제한) ~ 제 20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b> 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</b> (포괄계약)</p> <p>(기재생략)</p>	<p>원청채권의 만기일 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9 조 (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10 조 (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및 대출상환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원청채권 만기일 <b>직전</b> 은행영업일까지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액은 해당 대출금의 기일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원청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우선 상환 하며,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11 조 (대출취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제한) ~ 제 20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</b> (포괄계약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체상</p> <p>용어 수정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

2. 개정 시행일: 2019년 7월 4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